

제2538호
2017. 09. 13.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류 용 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17-74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2
제2017-75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3
● 공 고	
제2017-661호: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6
제2017-662호: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 공고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8
● 예 규	
제163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회청사관리규정	1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74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9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1길 55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 로 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04-656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1길 55	2017.09.13.	다산로31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다산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21-5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06	2017.09.13.	동호로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4.22.	한강변의 옛지명인 동호에서 유래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124, 432-129, 432-130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가길 32	2017.09.13.	동호로11가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동호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75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9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4길 6 외 66건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별 도 첨 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1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4길6	2017.09.13	건물철거 및 말소
2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0-2		
3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8-1		
4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6-2		
5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4-2		
6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6		
7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4-1		
8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4		
9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2		
10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2		
11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가길3		
12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가길7-1		
13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나길9		
14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나길11		
15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나길13		
16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나길3		
17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나길5		
18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길7		
19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가길7		
20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가길7		
21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가길5		
22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가길9		
23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8		
24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8		
25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6-1		
26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나길9-3	2017.09.13	건물철거 및 말소
27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나길9-4		
28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0-1		
29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0		
30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4길6-1		
31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8		
32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4길8		
33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4길10		
34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나길15		
35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4길14		
36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4길14		

37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가길19		
38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나길14		
39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가길20		
40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가길14		
41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가길14-4		
42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나길8		
43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나길8		
44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길11		
45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길17		
46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길19		
47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가길14-8		
48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길21		
49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길21-3		
50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가길14-9	2017.09.13	건물철거 및 말소
51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가길14-5		
52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길21-5		
53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길21-7		
54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길21-9		
55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4길24		
56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4길22		
57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길15		
58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나길6		
59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나길6-1		
60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4길28		
61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길25		
62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21		
63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23		
64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가길14-6		
65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가길22		
66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길29		
67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21-1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661호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09월 13일

중 구 청 장

1. 공고의 명칭 :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7. 09. 13. ~ 2017. 09. 27.

3. 공 고 대 상

- 자동차등록번호 : 06조54**외 5대
- 소유자명 : (주)**코퍼레이션외5대
- 운행정지 명령일자 : 2017. 08. 01. ~ 08. 31.
- 운행정지 사유 : 소유자 요청

4. 공 고 내 용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작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중구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2-3396-62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정지 자동차 현황

운행정지 상태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소유자등록번호	소유자주소	사용본거지주소	등록일
등록	06조54**	주-진인코퍼레**	110111-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 해남빌딩 *** (태평로2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 해남빌딩 *** (태평로2가)	2017.08.21
등록	58너57**	이미*	740502-2*****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3다길 *** (신당동)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3다길 *** (신당동)	2017.08.17
등록	서울48머91**	홍석*	580127-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41길 **, *층 (인현동2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41길 **, *층 (인현동2가)	2017.08.16
등록	18러20**	박시*	790107-2*****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 **, *동 ***호 (신당동, 현대맨션)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 **, *동 ***호 (신당동, 현대맨션)	2017.08.07
등록	서울82두29**	양경*	680609-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길 ***, ***호 (회현동1가, 시범아파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길 ***, ***호 (회현동1가, 시범아파트)	2017.08.07
등록	서울43고72**	**카드(주)	202-8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 (태평로2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 (태평로2가)	2017.08.03

● 서울특별시 중구청고 제2017-662호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 공고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물건 중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아래 보상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12.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사업의 명칭 :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 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32-10번지 일대
-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수용재결기관 :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열 랐 기 간 : 2017. 9. 13. ~ 2017. 9. 28. (15일간)
- 열 랐 장 소 : 중구청 가로환경과 (본관 7층)
- 수용재결대상 : 열람장소 비치
- 의견서 제출 : 편입되는 물건의 수용재결 신청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상기 열람기간 내에 중구청 가로환경과(본관7층)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문 의 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구청 가로환경과(02-3396-6022)로 문의 바랍니다.

수용할 물건목록과 소유자 및 관계인

□ 토 지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적 (㎡)	수용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종 류	성 명	주 소
1	신당동 132-6	대	160.8	160.8	이병국	서울시 중구 다산로42길 51	근저당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종로6가지점)
2	신당동 132-9	대	28	28	김창배	서울시 중구 다산로42길 55			

□ 물건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종 류	성 명	주 소	
1	신당동 132-6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00.7	이병국	서울시 중구 다산로42길 51	근저당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종로6가지점)	
		철근콘크리트조	1층	86.05						
		철근콘크리트조	2층	86.53						
		철근콘크리트조	3층	72.25						
		철근콘크리트조	4층	72.25						
		철근콘크리트조	옥탑층	9.36						
		벽돌조	창고(1층)	5.52						
		샷시조	창고(옥상)	12						
		철파이프조	차고(1층)	1식						
		천막지붕 및 스텐레스셔터								
		샷시조	창고1층	2.94						
2	신당동 132-8 132-9	시멘트블럭조	1층	48.6	김창배	서울시 중구 다산로42길 55				
		시멘트블럭조	2층	48.6						

수용할 물건목록과 소유자 및 관계인

□ 영 업

일련 번호	소 재 지	영업의 종 류	상호명	수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종 류	성 명	주 소
1	신당동 132-6, 201호	실내장식	디자인시우	1식	김종국	서울시 중구 다산로42길 51, 201호			

예	규
---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회청사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예규 제163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회청사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청사”라 함은 의회사무과 기타 의회의 부속건물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제3조(청사출입의 출입관리) ① 의장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출입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사출입을 하려는 자는(공무원 제외) 별지서식의 방문증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그 밖에 청사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청사방문자의 규모가 과다하여 청사내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을 받은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출입할 수 있다.

⑤ 청사방문자는 용무를 마친 경우에는 즉시 퇴청하여야 하고, 회의 방청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문 당일 18시까지 퇴청하여야 한다.

제4조(목적 외 사용허가) 청사를 의회의 회의나 공무수행등 그 통상의 사용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출입의 제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에 대해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한 물건 및 전산시스템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사람

2. 오물, 분뇨 등 청사 내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사람

3. 청사 내에서 물건 판매 등 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음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

5. 청사 안에서 집회 및 불법시위(이하 “시위”라 한다)를 위한 피켓, 현수막, 깃발, 확성기, 가면 등을 소지한 사람

제6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사 또는 청사안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청사 안으로 반입하거나 이를 청사안에서 휴대하는 행위

3.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등을 하는 행위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시위를 하거나 벽보·깃발·현수막·피켓 기타 표식을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

5.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청사 안에서 배회하거나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
7. 제4조에 위반하여 청사를 사용하는 행위
8.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을 받은 자(이하 “출입제한대상자”라 한다)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사 내로 출입하게 하는 행위
9. 기타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청사의 안전 또는 존엄성을 현저하게 해하는 행위

제7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의장은 제5조 각 호 해당 자 및 제6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청사 출입제한, 불법행위중지, 장애 제거 및 청사 경계 밖으로 퇴거 등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법행위중지 및 퇴거명령은 별표의 내용으로 구두 또는 문서로써 3회 이상 실시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행위중지, 장애제거, 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소방 인력과 장비 지원을 받아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6조의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 퇴거조치와는 별도로 시설물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의장은 증거 확보를 위한 녹음, 사진·비디오 촬영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고지하여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청사방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방문증 발급요청서(제3조제2항 관련)

방문자 기재 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방문 의원실(부서) 및 방문 대상자		방문시간		
	직전 의회방문 일시 및 목적				
	용 무	(목적 등을 상세히 기술)			

상기인은 의회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으로 청사 및 회의장 등 질서유지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의회청사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의회직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유지를 위하여 협조하겠습니다.
- 기타 공공질서유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의회직원의 퇴거조치 및 출입제한에 따르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2]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명령(제7조제2항 관련)

제 호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명령

성명(단체명)

귀하

주소

귀하(귀 단체)는 중구의회청사에서(소란, 확성기 및 피켓 사용, 점거 시위, 업무의 지장 초래 등) 행위를 함으로써 중구의회의 정상적인 행정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는 바, 즉시 동 행위 중지와 청사 경계 밖으로 퇴거를 요청(명)합니다.

이 중지 및 퇴거 요청(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중지와 퇴거 불응 시 강제 퇴거 조치는 물론 관련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과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청사의 관리·보호를 위해 의회청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청사의 질서유지 및 청사방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사출입의 출입관리 (제3조)

- 의장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출입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출입의 제한 (제5조)

- 청사 내에서 물건 판매 등 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
- 음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
- 청사 안에서 집회 및 불법시위(이하 “시위”라 한다)를 위한 피켓, 현수막, 깃발, 확성기, 가면 등을 소지한 사람

다. 금지행위 (제6조)

- 청사 또는 청사안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
-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등을 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시위를 하거나 벽보·깃발·현수막·피켓 기타 표식을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
-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행위
- 기타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청사의 안전 또는 존엄성을 현저하게 해하는 행위